

## 명예총장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명예총장의 자격, 추대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본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본교총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으로 업적이 현저하고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

**제3조(추대절차)** 명예총장의 추대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- ① 명예총장 추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장이 명예총장 임용을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② 명예총장 추대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2인, 교원 2인, 직원 1인으로 한다.

**제4조(복무)** ① 명예총장은 명예직으로 비 상근직이며 대학발전을 위한 자문, 홍보, 후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명예총장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예우)** 총장은 명예총장에 대하여 직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특별 강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